
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(Barrier Free) 조성				
사업구분	임기 내	신규	총사업비	향후 사업비 산정

□ 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「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」
- 사업내용(1)
 - BF의무 인증 대상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BF) 추진
 - 2021.12.4. 개정된 「장애인등편의법」은 BF 인증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BF 인증 대상 시설의 관리 필요성이 점차 증가 추세임.

「장애인등편의법」 제10조의 2	주요 내용
변경 전	○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 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변경 후	○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·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」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○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·증축 (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)· 개축 (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) 또는 재축 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

- 사업내용(2)
 - 보도블럭 규격 다양화 및 보·차도 경계구분 개선
 - 도로상 연석(높이 15~25cm) 및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 설치·관리하고 있으며,
 - 교통약자, 자전거 이용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경계부에 턱 낮춤 시공과 점자블럭 및 안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.

□ 목 표

-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률 100% 달성
- 보·차도 높이 낮추기 등 보행환경 개선

□ 추진계획

- BF 의무 인증 대상 시설의 신규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독려·사후관리
 - BF 의무 인증 대상 시설 현황 파악
 - BF 의무 인증대상의 본 인증이 누락되지 않도록 준공 시 사전검사 강화
 - BF 미인증 시설 및 유효기간 만료 대상 시설의 인증 유도를 위한 예산 수립 요청 및 추진 상황 모니터링
 - BF인증 추진 결과 수합·분석 및 사후관리
- 보행환경 개선
 - 차도와 보도 간 단차를 개선하는 사업구간은 사업추진 예정구간 및 2023년 도로개설 사업대상지부터 적용
 - ※ 보행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저속주행이 가능한 구간,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구간, 보행자 우선도로 등에 검토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
 - 보·차도 경계완화 등 구조개선, 안전시설물 개선 및 확충에 대해 '고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'에 반영
 - 도로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서에 전파,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

□ 사업기간 : 2022년 7. ~ 2026년 6. (계속)

□ 연도별 추진계획

단위사업	'22.7.	'23	'24	'25	'26.6.	임기후
BF의무인증 시행계획 수립		1	1	1	1	1
BF의무인증 대상시설 인증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		2회	2회	2회	2회	2회
보도블럭 규격 다양화	일산로 (백석역 ~일산병원 사거리) 보도정비 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도별 3월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 ○ 연도별 12월 사업 완료 				
보-차도 경계구분 개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도별 3월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 ○ 연도별 12월 사업 완료 				

□ 연도별 사업비 : 향후 사업비 선정

(단위 : 백만원)

단위사업	구분	계	기투자	'22.7.	'23	'24	'25	'26.6.	압기후
		200		200					
보도블럭 다양화	국비								
	도비								
	시비	200		200					
	기타								
보-차도 경계구분 개선	국비								
	도비								
	시비								
	기타								

□ 쟁점 및 대책

○ BF인증

- BF인증 추진 시 인증 수수료 발생하여 개별 부서 예산 수립 협조 필요
(의무대상 시설의 BF 미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)
- BF인증 의무 대상이나 미인증 대상시설은 수수료 외에 별도 건축행위 및 시설공사 대상여부 확인이 필요하며, 결과에 따라 추가 건축 비용 수반 가능성 있음
- BF인증 대상시설의 현 재산관리관에 BF인증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확보 및 BF인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독려 및 관리
- 「장애인등편의법」 제27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BF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대상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

○ 보행환경 개선

- 현재 보도 설치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건물(상가 등)과 직접 또는 전면공지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보도 턱을 낮출 경우 출입구와 단차 또는 경사가 심하여 사전 민원해소를 위해 주민동의 필요
 - ※ 도심재정비 사업지구 또는 신설 도로 사업구간부터 적용
- 보행의 연속성 및 교통약자의 편의성 등이 향상 되는 턱 낮춤 시공은 차량의 침범 우려 방지와 우천 시 노면수 처리 기능 보완 필요
 - ※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[별표 1]에 의거 보도 턱낮춤 예외 허용

주관부서	장애인복지과장 : 신동엽 ☎ 8075-3290 장애인정책팀장 : 최만호 ☎ 3282 담당자 : 김나영 ☎ 3284 / 이하동 : ☎ 3285
	도로관리과장 : 김두한 ☎ 8075-4690 덕양도로관리팀장 : 박재훈 ☎ 4691 담당자 : 서동진 ☎ 4692 유수현 ☎ 4693 일산도로관리팀장 : 김기찬 ☎ 4696 담당자 : 장홍선 ☎ 4697 노병운 ☎ 4698